

# 뉴질랜드 어업 수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을 위한 중요 정보

뉴질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취업 비자가 있으면 비자에 명시된 직책에서 그 고용주를 위해 뉴질랜드 어업 수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피고용인으로서의 권리와 외국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권리

고용되어 뉴질랜드 수역의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질랜드 수역에서의 고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면 고용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모국어로 작성된 계약서 사본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금액, 임금 계산 방식, 지급 시점 및 방식이 명시됩니다. 또한 고용주와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타 다른 고용 약관도 자세히 기재됩니다.
-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독립적인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의 뉴질랜드 고용 계약서 약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약관은 뉴질랜드 이민성이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거나 그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임금은 본인 명의의 뉴질랜드 은행 계좌에 고용주가 입금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임금은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외국인 선원에 대한 소정의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행 최저 임금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immigration.govt.nz/wages](http://immigration.govt.nz/wag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용 기간 동안 주당 평균 42시간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만큼 일할 수 없더라도(예: 악천후 등의 이유) 이 금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임금에서 다음 항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식비 - 식비 공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비자 발급비 - 비자 발급비는 [immigration.govt.nz/fees](http://immigration.govt.nz/fees)를 참조하거나 일과시간 중 +64 9 914 4100으로 전화해 확인해 보십시오.
- 뉴질랜드 왕복 항공료(고용주가 대신 지불한 경우)

**참고:** 식비, 비자 발급비, 항공료를 공제할 때 수령 임금이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뉴질랜드 최저 임금보다 낮아진다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달라고 요청한 전화카드나 담배 등 개인 물품의 구입비를 사후 변제하기로 고용주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이 밖의 항목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숙소, 건강보험, 보호 장비나 보호복이 포함됩니다.

- 고용 계약서를 확인하여 임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위에 설명한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고용 계약서에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 **뉴질랜드 국적 선박이나 뉴질랜드 국기 게양 선박에서 일할 경우**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12개월 근무 후 또는 고용 종료 시에 받습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것을 지급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근로 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어업 분야의 근로 시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 시간을 기록해 보관하고, 피고용인이 여기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자신의 근로 시간을 직접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이나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폭력이나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을 경험한 경우, 뉴질랜드 고용국(Employment New Zealand)이나 경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뉴질랜드 고용국이 제기된 문제를 조사할 것입니다.
- 부상 당하거나 다친 경우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고용 계약서에는 고용주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임금 액수나 생활 조건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고용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하십시오.
- 고용주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항상 독립적인 대리인**(구직 시 이용한 직업 소개인과 별도로)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만을 제기하고 싶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뉴질랜드 고용주에게 연락
  - 웹사이트 [employment.govt.nz](http://employment.govt.nz)를 통하거나 일과시간 중 **+64 9 969 2950**으로 전화해 뉴질랜드 고용국에 연락  
뉴질랜드 고용국은 고용 관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일과시간 중 전화해 통역 서비스 'Connecting Now'를 요청하고 자신의 사용 언어를 알려주십시오. 잠시 기다리면 몇 분 내로 통역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유관 노동조합이나 다른 선원 대표자에게 연락

## 의무

- 취업 비자에 명시된 그 고용주와 그 직무에 한해서만 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른 직무를 하거나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면 비자 조건 위반이므로 추방됩니다.
-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뉴질랜드에 불법 체류하는 것이므로 일을 그만두고 뉴질랜드를 떠나야 합니다. 비자 만료 후 42일 이내에 이민·보호 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뉴질랜드 출국 의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금되어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뉴질랜드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체류 신분에 대한 궁금한 점은 소속 뉴질랜드 선박 회사에 문의하거나 뉴질랜드 이민성 **+64 9 914 4100**으로 전화해 문의하십시오. 영어를 할 줄 모르면 귀하의 언어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언어를 쓰는지 상담원과 통화할 때 말하십시오. 잠시 기다리면 통역사가 연결되어 도와드립니다. 연결되는 동안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 또한 비자 확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migration.govt.nz/visa-verification](http://immigration.govt.nz/visa-verification)

## 유의 사항

- 육지에서 일하거나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추방 조치가 내려지고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마십시오.
- 만약 누군가가 접근해, 선박을 이탈해 육지에서 일하라고 제안한다면 이 사실을 선박의 항해사나 뉴질랜드 에이전트에게 알리십시오.
- 선원 수첩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이 정보는 향후 취업 및 취업 비자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과 뉴질랜드 고용국은 기업혁신고용부(MBIE) 산하 기관입니다. MBIE는 이 자료의 정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